#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7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홍기원·한민수·손명수

이연희 • 이기헌 • 윤종군

천하람 • 윤후덕 • 김영배

송옥주 · 서미화 · 박홍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규약 등에 따라 처분·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용지의 목적과 달리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등).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용지"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용지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를 청구받은 교육감은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까지 해당 학교용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학교용지를 매수 하여야 한다.
- ⑦ 시행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매수 청구를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받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라한다)인 시행자: 학교용지 용도 해제
-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아닌 시행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신청
- ⑧ 제5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매수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4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감이 아닌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한 시행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비지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1	\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이하 이 조에
					서 "학교용지"라 한다)을 처분
					하려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
					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
					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까지 관할 교육감에
					게 해당 학교용지의 매수를 청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를
					청구받은 교육감은 제40조제5
					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까
					지 해당 학교용지의 매수 여부
					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⑥ 교육감은 제5항 후단에 따
					라 매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학교
					용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 <신 설>

<신 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⑦ 시행자는 제5항 후단에 따 라 매수 청구를 거절한다는 뜻 을 통지받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학교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 용 도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 시 · 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 하 이 조에서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권자"라 한다)인 시 행자: 학교용지 용도 해제
- 2.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가 아닌 시행자: 학교용지 용 도 해제 신청
- ⑧ 제5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매수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기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_\_\_\_\_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감이 아닌 자에게학교용지를 처분한 시행자

3. (현행과 같음)